

제333회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2015년5월12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6.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

부의된 안건

- 의사진행의 건 2
- 1. 제3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4
-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4
- 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제출) 5
- 5.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이원욱 · 김경협 · 이개호 · 한정애 · 민홍철 · 홍익표 · 김기준 · 심재권 · 조정식 · 부좌현 · 노웅래 · 이재오 · 유성엽 · 도종환 · 최민희 · 강동원 · 안민석 · 임내현 · 이미경 · 배재정 · 김운덕 · 김상희 · 강창일 · 한명숙 · 최규성 · 박광온 · 홍종학 · 이종걸 · 주승용 · 전정희 · 박홍근 · 오영식 · 박지원 · 노영민 · 정세균 · 박성호 · 백재현 · 최재성 · 이우현 · 정청래 · 신정훈 · 이해찬 · 서영교 · 김민기 · 강기정 · 박완주 · 진선미 · 이목희 · 정호준 · 설훈 · 이석현 · 박기춘 의원 발의) 6
- 6.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 제출) 8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
- 5분자유발언 10
- 의사진행의 건 11

(14시1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7일 교섭단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에 이종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수성 의원 대표발의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1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경태 의원 등 27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회가 밀린 숙제를 하는 날입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연말정산으로 힘들었던 봉급생활자와 그리고 상가 자영업자 그리고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작은 기쁨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미흡하나마 우리 국민들께서 기운 차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의사진행의 건

(14시14분)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다음에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민희입니다.

반쪽짜리 날치기 박상옥 대법관은 자진사퇴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무리한 직권상정을 사과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 의장님, 공든 탑이 무너졌습니다. 합리적 국회운영의 탑을 쌓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난 5월 6일 직권상정으로 그 탑이 허물어지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 의장님의 합리적 운영을 바라보며 기대를 걸었던 초선 의원으로서 낙담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상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월권적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옥 인사청문회는 정당한 사유로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저희 당은 대내외적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청문회, 성실한 자료 제출, 증인출석에 대한 여당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요식행위로 하는 청문회에 야당이 동의할 리가 있습니까?

여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법무부는 자료제출 거부 혹은 지연으로 청문회를 방해했습니다. 법무부가 공판기록 등 600페이지의 열람을 허용한 것은 청문회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반복해서 야당은 법무부에 자료제출과 청문회 연장을 요구

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저희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축소·조작 사건에서 박상옥 검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증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모르쇠, 발뺌, 엉뚱한 사실왜곡으로 일관했습니다. 끝내 박상옥 인사청문회는 종료 선언도 못하고 정회된 채 인사청문경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박상옥 인사청문회는 정당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이 아닙니다. 새누리의 요구는 직권상정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 의장님은 과다한 해석으로 국회법 범위를 넘은 월권적 직권상정을 하였습니다. 이 점 고백하고 사과하십시오. 국회가 열려 있는데 지금 의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빨리 들어와 사과하십시오.

국회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없이 임명동의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합리적인 정 의장께서 왜 이런 좋지 않은 전례를 만드셨는지 스스로 결단한 것인지의 구심이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정 의장님은 국회 역사에 오점을 남긴 것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박상옥 후보자는 최초의 직권상정 반쪽 대법관, 임명 이후 법원 내부 설문조사에서 80%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부적절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묻습니다. 대한민국 법조계에, 검찰에 이토록 대법관 할 만한 인재가 없단 말입니까? 왜 하필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치검찰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에서 법적 면죄부를 준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밀어붙이신 겁니까?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권력 순응적 부적격 후보를 직권상정해 대법관으로 밀어붙인 여당과 국회의장의 반의회적 폭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정의감의 이름으로 박상옥 대법관에게 촉구합니다. 즉각적으로 사퇴하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은 사과하고 두 번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다음은 민현주 의원 나

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의원**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으로 참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4월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5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고 여야가 합의하여 겨우 두 번의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여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오는 28일 두 번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을 포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본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온 민생법안은 연말정산 재정산과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단 3건의 법안뿐입니다.

지난 4월 임시회 한 달 내내 여야 할 것 없이 각 상임위 위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를 끝낸 법안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6일 법사위를 통과하고 이제 본회의 처리만을 앞둔 60여 개의 시급한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입니다. 4월 국회에서 이미 처리하기로 합의되어 있던 안건인 만큼 여야가 더 논의를 해야 하거나 이견이 없는 법안들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이미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단 3개의 법안만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사위원장께서는 전자결재를 안 했다는 이유로 3개의 법안만 본회의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이며 월권입니다. 여야 위원이 다 동의하여 법사위에서 이미 의결을 끝낸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인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본회의를 열고 단 3건의 법안만 처리한다면 우리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루하루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추락시키려고 하십니까? 이미 논의가 끝났고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안을 두고 스스로 발목 잡는 국회 상황을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법사위에는 아직 논의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남아 있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좀 조용히 경청하세요.

○**민현주 의원** 소액 다수 투자자들을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논의를 속도를 내어 국민들께서 기다리는 법안 통과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때입니다.

단 3개의 민생법안만을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은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이는 국회의 도리가 아닙니다.

(「약속이나 지켜요」 하는 의원 있음)

많은 토론과 논의를 끝낸 법안을 두고 더 이상 여야가 정치적인 논리나 이득을 앞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장의 몽니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국민적인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성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본회의에서는 우리 국회가 밀린 숙제를 꼭 완결해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국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 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발목 잡는 행태를 더 이상 보여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급한 민생을 돌보기 위해 여당 지도부와 지난 야당 지도부가 합의한 법안들, 5월 6일 본회의에 부의된 56건의 법안들은 이 자리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3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25분)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3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5월 11일부터 5월 28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월 28일까지의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강석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강석훈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서초을 출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중·저소득 근로자 등의 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출산·입양 공제를 신설하였으며,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 및 표준세액공제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등 근로소득세 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3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4시29분)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의사일정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서기호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과 김진태 의원, 서기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권리금과 권리금계약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권리금의 회수에 관한 임대인의 방해금지의무를 신설하면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둘째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3년의 소멸 기한으로 하였고,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셋째 대항력의 적용범위를 모든 임대차계약으로 확대하고 권리금의 보호 대상 범위는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로 확대하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였으며, 넷째 임대차 표준계약서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 위원장 제출)

(14시32분)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조원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조원진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실 의원, 박남춘 의원, 김민기 의원, 이찬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따른 교부금 차액을 충당하거나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영사항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은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의원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지방재정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이미 여야가 합의했으므로 통과시켜 주시리라 기대하면서도 다시 한 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과정은 유아의 출발점 교육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을 마련하여 2012년 3월 만 5세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이래 2013년 3월에는 만 3~4세로 확대 왔습니다.

지원 단가 및 재정 소요는 국공립 유치원은 1인당 월 6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월 22만 원을 부모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재원은 2013년과 2014년 국고와 지방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했고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에는 전년도보다 5000억이 증가한 3조 9000억을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으로 교부했으며 부족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지원

하기로 여야 합의도 이룬 바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지속적 추진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누리과정 예산의 원활한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청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은 교부금이나 지방단체 전입 등 외부의존수입이 92%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경우 지방채 이외의 재원 확보수단이 없으며, 세출은 인건비·저소득층 교육비·학교시설비·채무상환비로 교육 투자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할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출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지방교육재정은 세입의 75%를 차지하는 교부금이 내국세의 결손에 따라 2조 7000억이 정산됨에 따라 1조 5000억이 감소되어 재정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1조 7000억을 편성하지 못했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현재 모두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국고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기로 여야가 어렵게 수차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외에는 안타깝게도 다른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제 곧 추경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므로 이번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유이기도 한 이 지방재정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지원 중단을 우려하는 많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도 아무 조건 없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4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3인, 기권 29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이원욱·김경협·이개호·한정애·민홍철·홍익표·김기준·심재권·조정식·부좌현·노용래·이재오·유성엽·도종환·최민희·강동원·안민석·임내현·이미경·배재정·김윤덕·김상희·강창일·한명숙·최규성·박광온·홍종학·이종걸·주승용·전정희·박홍근·오영식·박지원·노영민·정세균·박성호·백재현·최재성·이우현·정청래·신정훈·이해찬·서영교·김민기·강기정·박완주·진선미·이목희·정호준·설훈·이석현·박기춘 의원 발의)

(14시41분)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김세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外交統一委員長代理 金世淵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세연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을 포함한 일본의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와 함께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써 금번 결의안 채택이 더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국회의 단호한 의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결의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이 안전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이 안전의 토론에 앞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민현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하셨는데 여야 간 합의, 사회적 대타협을 청와대 가이드라인 하나로 손바닥 뒤집듯 껌 게 누구입니까? 적 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국회가 여야 간 증오와 대립의 장으로 치닫는 것을 보시면서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안 됩니다,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일본 정부가……

앉아 주십시오.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잠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한을 대변하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조선인 강제 징용자에게 노예 같은 노역을 강요하고 목숨까지 앗아간 만행의 현장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겠다는 일본의 행태는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오늘날 한일 간의 우호 협력에 어떤 걸림돌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만장일치로 여야 한마음으로 이번 결의

안을 채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해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특례법안은……

(「무슨 소리야, 이게!」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하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받을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한 협정이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울분을 쌓아 놓고 50여 년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2년 5월 24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같은 해 12월에 피해자와 유족 252명이 미쓰비시 등 일본의 3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소송을 낸 피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가 추산하는 우리나라 피해자는 780만 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민법에 의하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에 시효가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법원의 선고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기산한다면 이번 달 24일에 시효가 만료되어 수많은 피해자가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 없게 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본의 전범기업에 의해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가 분명한데 우리 민법의……

(「결의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십시오!

(「뭘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로 인해 제대로 소송을

해 볼 수도 없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무슨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조용……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이처럼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개선되어야 하기에 본 의원이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과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청구권에 한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특례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국가는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방기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한일협정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5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찾았지만 고령의 피해자들……

〔속기록 좀 보고 얘기해〕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더 크게 해요, 더 크게〕 하는 의원 있음

국회에서요, 자 우리 입법부가 왜 필요합니까?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을 국회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누리당이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속기록 보십시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특례법안에 반대를 하였습니 다.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늘 이 규탄 결의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새누리당이 일본에 의해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는 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오늘 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립 서비스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장내 소란)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회의에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는 문 제는 여야 교섭단체대표의 합의가 있으면 추가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문제 도 양측 교섭단체대표 간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서 일 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 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은 외교통일위 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 위원장 제출)

(14시52분)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의사일정 제6항 침략역 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 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의 임내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대리 임내현 존 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 원 여러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 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9일 일본 아베 총리는 미국 상하 원 의회 연설에서 과거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 없이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표현으 로만 갈음하였으며, 인신매매의 피해자 등과 같 은 교묘한 수사를 동원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를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차원의 전시 여성인권 문제인 것처럼 호도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겉으로는 ‘여성이 빛나는 사회’라는 대표 슬로건을 내세우며 개발도상국의 여성인권 유린 방지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세계여성인권포럼을 창립하는 등 여성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렇듯 추악한 과거의 가해 행위를 덮어버리려는 획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거 잘못된 침략과 여성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규탄하고 진정한 사과와 국가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번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결의안의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아베총리 규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찬성 의견입니다. 다만 그에 앞서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연주 의원께서 얘기했던 강제징용 배상법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토론 안건이 아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원칙대로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일단 강제징용 배상법이 소멸시효가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꼭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멸시효라는 것은, 존경하는 이연주 의원이 주장한 것은 하나의 설로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설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민법상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되었다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법

원의 판결이 약 3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판결로부터 3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판결이 1심 판결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부터 기산하는 게 보다 법리에 맞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직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김진태 의원님께서도 아베 규탄 결의안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애초에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 말씀이 끄트머리가 들리지도 않았어요. 아베 규탄 결의안 쪽으로 얼른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진태 의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좀 형평성을 가지고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해, 그만! 들어가, 들어가!」 하는 의원 있음)

그런 형편이고요, 법사위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 법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이 그 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자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이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할 말로 소위를 통과하면 뭐 합니까? 법사위를 통과하면 뭐 합니까? 다 통과된 법을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누가 깼어요!」 하는 의원 있음)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양당 대표의……」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의원 어떤 특정 하나의 주장만 가지고 상대방 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김무성 대표 약속부터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없애고 청와대만 그냥 뒤요, 그러면 앞으로! 청와대하고 직접 우리가 협상하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전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의사진행 좀 공평하게 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아까 본안과 관계없는 토론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에 제지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한 번 우리 국회 본회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부터 지키세요, 약속!」 하는 의원 있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제 진행이 불공정하게 느껴졌으면 앞으로 더 공정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자가 없는 것 같으니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부의장님, 정회해 주세요. 왜 정회를 안 해 줘요?」 하는 의원 있음)

(「법안소위 더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정회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여야 교섭단체대표들 간에 정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야 되는 데 한쪽의 제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못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말이지요, 상임위가 완전히 무력화된 법이에요. 이상민 의원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이 와중에 국회의장은 왜 해외에 나가서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투표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제석 238인 중 찬성 238인으로서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총리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회해 주세요, 정회! 아니, 법사위원장을 하더니 상임위를 무력화시켜도 되겠습니까, 이거!」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2분)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015년 5월 27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소란)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 덕진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입니다.

오늘 유난히 의사장이 상당히 소란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으로 떠오른 국민들의 최선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피담이라는 유행이 떠돌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3종 세트입니다.

대개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은 민간 보험사가 퍼트려 왔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겨 개인연금 시장을 키우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기금 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 폭탄, 피담 3종 세트 유포자가 놀랍게도 민간 보험회사가 아닌 청와대입니다. 세

금을 걷고 국민연금을 관리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청와대와 홍보수석이 나서서 1702조 세금 폭탄, 보험료 폭탄 괴담을 유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세금 폭탄론을 퍼트리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적정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고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할 정부가, 국민 노후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보험료 지급에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세금이 아닌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에 소득대체율을 올린다고 세금 1702조 원이 들어간다고, 세금 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괴담입니다. 또 국민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는 것을 보험료 폭탄이라고 헐뜯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의 터무니없는 주장의 근거지가 어디인지 궁금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진원지임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보험료 2배 인상, 세금 폭탄론이 맞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청와대 주장의 이론적 근거는 문형표 장관이 제공했다고 판단합니다. 청와대의 괴담 3종 세트 유포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 여부로 맞서고 있는 여야 모두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하는 것은 온 국민이 TV 생중계로 지켜본 여야 두 대표의 서명 내용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140여 일간 여야·정부·공무원단체와 전문가가 모여 치열한 마흔일곱 차례의 회의 끝에 동전의 양면과 같은 2개의 합의를 이뤄 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계 1위의 심각한 노후빈곤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내걸고 소득대체율 50%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괴담 유포자가 되어 이 소중한 합의를 깨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8월 말까지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청와대가 뒤에서 국민연금의

‘ㄱ’자도 꺼내지 말고 소득대체율의 ‘ㅅ’자도 꺼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대타협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국회를 청와대의 꼭두각시로 내모는 입법권에 대한 월권적 도전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노후빈곤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을 가로막는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합의한 사회적 기구에 정부가 충실히 자료를 제공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야지 마치 공적연금제도를 약화시키려는 민간 보험회사처럼 기금이 고갈된다, 보험료 폭탄이다, 세금 폭탄이다라는 괴담을 퍼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세계 최고 노후빈곤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야당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안에 반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여당에도 촉구합니다.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해서 생중계하는 가운데 온 국민 앞에서 합의한 내용을 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용기를 갖고 내부 반발을 설득하고 청와대의 외압을 물리쳐 5월 2일 여야 대표 합의를 빨리 이행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진행의 건

(15시04분)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다음은 끝으로 다소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합니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과 동료·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입니다.

저는 좀 전에 복지위에서 저와 함께 활동하는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의 얘기를 잘 경청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출범시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월 2일 날 특위를 통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5월 2일 여야 양당 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존중하여 5월 6일 본회의에서 사회적 기구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날 갑자기 사회적 기구 규칙에 반드시 50%가 어떠한 형태로든 명시돼야 된다고 얘기한 야당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누리당 의총을 통해서 추진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야당이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한 소중한 5월 2일의 합의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이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내 소란)

오늘 국민들께 우리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사회적 기구에 대해서 그 부분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분명히 사회적 기구가 구성이 됐다면 지금 이미 사회적 기구의 구성에 대한 규칙은 통과되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명목소득대체율을 할 것인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건복지위를 하면서…… 좀 전에 피담을 유포한 것이 정부다,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반 회사들이, 보험회사들이 그와 같은 것을 하는데 정부가 피담을 내보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정말 사실무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어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얘기한 것은 그야말로 1702조와 219만 원이 실제로 재정추계에 근거해서 만약에 더 이상 보험료의 부담 없이 50%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 2080년까지 65년간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험료를 어떻게 올려서 앞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지는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그곳에서 얘기돼야 하는 것

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들의 15%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과연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고 해서 이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까?

지금도 두루누리 사업으로 인해서 자신이 내는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보전해 주지만 이분들은 15%밖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명목소득대체율 50%로 하는 순간 보험료의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아마 더욱더 사각지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첫 번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어떻게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릴 것인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풀고, 두 번째 어느 정도의 명목소득대체율을 갖고 갈 것인지 이를 위한 보험료 조정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인지 국민연금 가입한 모든 분들, 직장가입자, 그다음에 같이 돈을 매칭해 주는 회사, 그다음에 또한 모든, 9%를 혼자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모두의 얘기를 듣고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6일 본회의를 통과시키지 못한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이 돼서 5월 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되고, 50%는 양당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함께 합의한 실무기구의 합의를 조정한다라는 그 원안을 살려서 반드시 통과돼서 국민들께 이 부분이 더 뒤로 밀려지는 모습을 보여 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에게 책임을 넘기시지 마시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여러 의원님께 협조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 의사진행발언은 산회 직전에는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진행할 의사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4시간 전에 5분발언을 신청하게 돼 있

는 관계상 우리 김현숙 의원님께서 신청을 급히 하셔서 예외적으로 드린 건데 그랬더니 또 야당 측에서도 1명 또 강기정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부득이 여야 균형상, 형평상 강기정 의원까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고 바로 산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합의가 안 됐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하게 놔 둬」 하는 의원 있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니까!」 하는 의원 있음)

(「합의가 안 됐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합의가 안 됐다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해진 의원님, 진행해야 되니까 이리로 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이 지시하면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좀 전에 김현숙 의원님에게 그런 예외적 기회를 드린 데 이어서 야당 측에도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의사진행발언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기정 의원 발언하십시오.

○강기정 의원 국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지난 130일 동안 나름대로 공무원단체 설득해 가면서 이 자리에 계신 조원진 간사님을 포함해서 주호영 위원장님 함께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이요, 아주 이상적인 좋은 안 만들 수 있지요.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는 좋은 안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 그런 안인 거지요. 가장 좋은 안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도 맞춰야 되겠지만 적어도 계약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들의, 또 당사자들의 합의와 동의 과정이 있는 것이 좋은 안 아닙니까?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2009년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고,

그런데 당시에 연금을 받고 있는 36만 명,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손도 못 댔습니다, 2009년 연금 개혁. 이번에는 그분들 설득시켜서 적어도 5년 동안 한 40조라는 재정 절감을 이룰 수 있도록 불가인상분을 동결시킨 것 아닙니까? 이것 큰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급으로 들어와서 30년 동안 일하고 5급 내지 6급으로 그만둔 공무원들이 137만 원 받는 것, 그것 정말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공무원연금법안을, 옥동자를 만들어 오니까 청와대, 정부가 하는 첫마디가 부족하다, 공무원연금 엉망이다, 개혁안 엉망이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것보다도 합의안은 약 25조 원이 더 절감된 그런 법안 아닙니까? 아니, 재정보고할 때문에, 재정 어려움 때문에 연금 개혁하고 해서 했는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께서 발의한 안보다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왔더니 이상하다고 그러니, 그러면 어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통과시키자는 얘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다 아시잖아요. 이번 5월 2일 날 합의안은……

신동우 의원님, 합의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공무원연금법 합의, 두 번째가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 세 번째가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을 살 때 안가도 사지만 옆에 정원도 살 거고 거기에 붙어 있는 발뽀기도 살 것 아닙니까?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큰방만 사고 발뽀기하고 정원은 따로 다시 계약을 맺자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단체들이……

(「발뽀기 안 사야지, 돈이 없으면」 하는 의원 있음)

공무원단체들이……

돈이 없으면요? 아니, 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시더라도.

함 의원님!

(「국민들이 용납이 안 된대요, 국민들이」 하는 의원 있음)

이 의원님, 다시 하세요.
 130일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새누리당
 여러분들이 그러면 130일 전으로 돌아가서 공무
 원들 설득시켜 보고 테이블에 앉히시라고요. 그
 려 자신도 없으면서……

(「아니, 공무원연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잖
 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땀소리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이번 합의 계약서는 3장으로 됐다니깐요. 공무
 원연금, 인사정책적 측면, 국민연금, 3장으로 돼
 있는데 뭐…… 누가 나서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1
 장만 처리하고 2·3장은 다음에 하자고 그런 이
 야기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약속 지키시고, 50-20 이것은 유승민 대표, 우
 윤근 대표, 저, 조원진, 주호영 다 합의한 내용이
 에요. 같이 합의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따로 합의
 한 게 아닌 거예요.

제발 좀 합리적으로 약속 지키면 다 됩니다. 이
 성 잃지 마시고 제발 좀 합리적으로 약속 지키세요.

청와대, 친박계, 약속 지키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이석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
 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제333회 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2015. 5. 11~5. 28

일 자	부의안건	비 고
5. 11(월)		○위원회 활동
5. 12(화) 14:00	1. 제3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안건심의 ※휴회결의	○5. 11~ 5. 28 (18일간) ○5. 13 ~ 5. 27 (15일간)
5. 13(수) ~ 5. 27(수)	휴 회 (15일간)	○위원회 활동 -법률안 등 안건 심사
5. 28(목) 14:00	1. 안건심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33인)

- | | | | |
|-----|------|-----|-----|
| 강기운 | 강동원 | 강석호 | 강석훈 |
| 강은희 | 강창일 | 강창희 | 권은희 |
| 권垠희 | 길정우 | 김경협 | 김광림 |
| 김광진 | 김기선 | 김기식 | 김기준 |
| 김도읍 | 김동완 | 김동철 | 김명연 |
| 김무성 | 김민기 | 김상민 | 김상희 |
| 김성주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 김승남 | 김영우 | 김영주 | 김영환 |
| 김용남 | 김용익 | 김용태 | 김윤덕 |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 김중훈 | 김진태 | 김춘진 | 김태년 |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흠 | 김학용 |
| 김한길 | 김한표 | 김현 | 김현숙 |
| 김희선 | 김희국 | 나성린 | 남인순 |
| 노영민 | 노웅래 | 노철래 | 도종환 |
| 류성걸 | 류지영 | 문재인 | 문정림 |
| 문희상 | 민병두 | 민병주 | 민현주 |
| 민홍철 | 박광온 | 박기춘 | 박남춘 |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 박민수 | 박민식 | 박범계 | 박병석 |
| 박상은 | 박성호 | 박수현 | 박완주 |
| 박윤옥 | 박인숙 | 박주선 | 박창식 |
| 박혜자 | 박홍근 | 배덕광 | 배재정 |
| 백근기 | 백재현 | 변재일 | 부좌현 |
| 서상기 | 서영교 | 서용교 | 서청원 |
| 설훈 | 손인춘 | 송영근 | 송호창 |
| 신경림 | 신경민 | 신계륜 | 신기남 |
| 신동우 | 신상진 | 신정훈 | 심재권 |
| 심재철 | 심학봉 | 안규백 | 안상수 |
| 안철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승조 |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오영식 |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우윤근 |
| 원유철 | 원혜영 | 유기홍 | 유대운 |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 유의동 | 유재중 | 윤관석 | 윤명희 |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욱 | 윤호중 |
| 윤후덕 | 은수미 | 이강후 | 이개호 |
| 이군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 이미경 | 이상민 | 이상일 | 이상직 |
| 이언주 | 이에리사 | 이우현 | 이운룡 |
| 이원욱 | 이윤석 | 이이재 | 이인영 |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걸 | 이종배 |
| 이종진 | 이종훈 | 이진복 | 이찬열 |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청 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성 추 미 애 하 태 경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반대 의원(4인)

강 기 정 신 학 용 심 상 정 정 진 후

기권 의원(7인)

김 관 영 김 영 록 김 제 남 김 현 미
 박 영 선 서 기 호 천 정 배

(강창일 의원 표결기 오작동, 이정현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44인, 찬성 의원 233인, 기권 의원 7인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39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권 은 희 권 垠 希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언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희 국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성 호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윤 옥 박 흥 근
 배 덕 광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상 수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윤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진 후
 정 청 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진 성 준 천 정 배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성 추 미 애
 하 태 경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반대 의원(1인)

주 호 영

기권 의원(4인)

김 기 식 김 도 읍 김 회 선 여 상 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02인)

강기윤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권은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환	김용남	김용태	김운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정훈	신학용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호영	진성준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반대 의원(13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권垠希
김경협	김광진	김용익	노응래
이인제	정세균	정청래	주승용
천정배			

기권 의원(29인)

김기식	김상희	김영록	김영주
김한길	김현미	남인순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홍근	송호창	심상정	안철수
오영식	유대운	은수미	이미경
이원욱	이인영	임수경	전해철
정진후	조정식	진선미	한명숙
홍의락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237인)

찬성 의원(237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운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응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정청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천정배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김춘진·홍문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37인, 기권 의원 없음)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238인)

찬성 의원(238인)

강기윤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린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 언 주 이 에 리 사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자 스 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진 후 정 청 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정 배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성 추 미 애
 하 태 경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흥 문 종 흥 문 표 흥 영 표
 흥 의 락 흥 익 표 흥 일 표 흥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흥 근
 배 덕 광 배 재 정 백 균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설 훈
 손 인 춘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상 수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에 리 사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자 스 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훈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진 후 정 청 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정 배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성 추 미 애 최 봉 흥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하 태 경
 함 진 규 흥 문 종 흥 문 표 흥 영 표
 흥 의 락 흥 익 표 흥 일 표 흥 지 만
 흥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출석 의원(247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권 은 희 권 垠 希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국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나 성 립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회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윤 욱 박 인 숙

○개의 시 재석 의원(235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권 은 희
 권 垠 希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민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정청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조정식	조해진	주호영	진선미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진성준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김용태	김윤덕	김장실	김재경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성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추미애	하태경	한명숙	한선교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영표
김태원	김태호	김학용	김한길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산회 시 재석 의원(181인)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강기정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류성결	류지영	문재인	문정림	강은희	강창희	권垠希	길정우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김상민	김상희	김성주	김성찬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김용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김재경	김정록	김제식	김종태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김태원	김태호	김학용	김한표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신기남	신동우	신상진	신정훈	노철래	도종환	류성결	류지영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문재인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심학봉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오신환	오영식	우원식	우윤근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원유철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백균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서영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동우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신상진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심학봉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이연주	이에리사	이우현	이운룡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신환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오제세	우원식	원유철	유대운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유성엽	유승민	유은혜	유의동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영석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윤재옥	은수미	이개호	이군현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해찬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이상일	이상직	이연주	이에리사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현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이재
전정희	장하진	전해철	정두언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정현
정문헌	정미경	정성호	정세균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진후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현 재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미 경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진 후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호 영
 천 정 배 최 규 성 최 봉 흥 최 재 성
 추 미 애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출장 의원(7인)

권 성 동 김 태 환 박 원 석 신 성 범
 심 윤 조 이 병 석 이 한 성

○청가 의원(28인)

강 길 부 경 대 수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우 남 김 희 정 문 병 호 박 명 재
 박 지 원 송 광 호 신 의 진 안 민 석
 양 창 영 유 인 태 유 일 호 이 목 희
 이 주 영 이 학 영 이 현 승 장 하 나
 전 순 옥 정 갑 윤 정 의 화 정 호 준
 최 동 익 한 기 호 황 주 흥 황 진 하

○국회사무처

입 법 차 장 구 기 성
 의 사 국 장 장 대 섭

○출석 국무위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 경 환
 법 무 부 장 관 황 교 안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정 중 섭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지정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정 갑 윤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3일간)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 석 현
 5월 10일부터 의장 귀국 시까지
 (2015. 5. 7)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무	유의동	조현룡	새누리당	2015. 5. 6
기획재정	조현룡	유의동		

○교섭단체대표의원 변경

교섭단체	변경 전	변경 후	연월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이종걸	2015. 5. 7

○의안 제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 5. 6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윤명희 · 황인자 · 서청원 · 아에리사 · 정갑윤 · 이한성 · 박윤옥 · 김우남 · 박인숙 · 조명철 의원 발의)

5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박명재 · 김승남 · 변재일 · 박범계 · 양창영 · 최봉흥 · 윤영석 · 정갑윤 · 김을동 · 이현재 · 이철우 · 박맹우 · 손인춘 · 김정록 · 이만우 · 강석훈 · 김종태 · 이이재 · 김제식 의원 발의)

5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 5. 6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 2015. 5. 6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박홍근 · 전순옥 · 이개호 · 부좌현 · 진선미 · 박주선 · 박수현 · 진성준 · 김기준 · 노웅래 · 임수경 · 김상희 · 유승희 · 정청래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2015. 5. 6 진선미 · 조정식 · 이개호 · 김승남 · 이상호 · 안규백 · 박남춘 · 김민기 · 배재정 · 김기준 · 유승희 · 신경민 · 김우남 · 이해찬 ·

노웅래 · 김광진 · 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 2015. 5.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한기호·황영철·정문헌·김진태·권성동·이강후·김용태·송영근·김성찬·정미경 의원 발의)

5월 7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 5. 6 국방위원장 제출)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박명재·김승남·변재일·박범계·양창영·최봉홍·윤영석·정갑윤·김을동·이현재·이철우·박맹우·손인춘·김정록·이만우·강석훈·김종태·이이재·김제식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박홍근·배재정·전순옥·이개호·부좌현·진선미·박주선·박수현·김기준·노웅래·임수경·김상희·유승희·정청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양창영·이한성·김종태·윤영석·김세연·조명철·김기준·김성태·이정현·박창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황주홍·김성곤·김광진·김춘진·박민수·도종환·강창일·조정식·유성엽·김영록·이찬열 의원 발의)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윤명희·정갑윤·이한성·강은희·박윤옥·김우남·송영근·조명철·정문헌·김춘진 의원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윤명희·정갑윤·이한성·강은희·박윤옥·경대수·김우남·송영근·조명철·이주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 2015. 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5. 6 정부 제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이진복·함진규·이만우·이현재·염동열·윤재옥·김상훈·이강후·전하진·강은희·김한표·길정우·홍지만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이진복·함진규·이만우·이현재·염동열·윤재옥·김상훈·이강후·전하진·강은희·길정우·홍지만·김한표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이진복·함진규·이만우·이현재·염동열·윤재옥·김상훈·이강후·전하진·강은희·김한표·길정우·홍지만 의원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홍익표·이종걸·김영록·추미애·박주선·이찬열·김춘진·박광온·김상희·설훈 의원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홍익표·이종걸·김영록·추미애·박주선·이찬열·김춘진·박광온·김상희·설훈 의원 발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홍익표·이종걸·김영록·추미애·박주선·이찬열·김춘진·박광온·김상희·설훈 의원 발의)

이상 7건 5월 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이명수·정희수·김을동·박윤옥·이종진·김기선·신경림·김정록·정용기·신의진 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이명수·김을동·박윤옥·이종진·

김기선 · 신경림 · 정용기 · 신의진 · 윤영석 ·
김정록 의원 발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이명수 · 정희수 · 김을동 · 박윤옥 ·
이종진 · 김기선 · 신경림 · 김정록 · 정용기 ·
신의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
발의)

(2015. 5. 6 김광진 · 이개호 · 황주홍 · 김제식 ·
주승용 · 부좌현 · 박남춘 · 김기준 · 유승희 ·
김우남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 2015. 5. 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2015. 5. 6 정수성 · 이채익 · 이한성 · 윤영석 ·
이노근 · 유재중 · 박명재 · 김종태 · 권성동 ·
조경태 의원 발의)

5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주거기본법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1건 2015. 5. 6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 2015. 5. 6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 결의안**

(2015. 5. 6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장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 5. 6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제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함진규 · 박성호 · 강기윤 · 김태원 ·
손인춘 · 홍문표 · 홍철호 · 이이재 · 염동열 ·
강은희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부좌현 · 강창일 · 이개호 · 조정식 ·
안규백 · 김성곤 · 박남춘 · 노영민 · 백군기 ·
황주홍 의원 발의)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부좌현 · 강창일 · 이개호 · 조정식 ·
안규백 · 김성곤 · 박남춘 · 노영민 · 백군기 ·
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3건 5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김용태 · 유의동 · 정용기 · 김성태 ·
정두언 · 이진복 · 김종훈 · 신동우 · 이운룡 ·
박대동 · 강석훈 · 신성범 · 이현재 · 경대수 의원
발의)

5월 1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김민기 · 이개호 · 장하나 · 조정식 ·
윤관석 · 박홍근 · 이목희 · 김광진 · 노웅래 ·
진선미 · 신경민 · 박남춘 · 황주홍 의원 발의)

5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서용교 · 박명재 · 송영근 · 신의진 ·
김장실 · 최봉홍 · 류지영 · 정용기 · 이채익 ·
신경림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서용교 · 박명재 · 송영근 · 신의진 ·
김장실 · 최봉홍 · 류지영 · 정용기 · 이채익 ·
신경림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에 회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용교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서용교 · 박명재 · 송영근 · 신의진 ·
김장실 · 최봉홍 · 류지영 · 정용기 · 이채익 ·

신경림 의원 발의)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박혜자 · 장병완 · 김운덕 · 박주선 · 김성곤 · 윤관석 · 임내현 · 김영록 · 이윤석 · 김동철 · 설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5. 8 정부 제출)

5월 1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이찬열 · 김정협 · 박주선 · 신학용 · 유기홍 · 전정희 · 박홍근 · 안규백 · 황주홍 · 박광온 의원 발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이주영 · 류지영 · 나성린 · 김한표 · 배덕광 · 박성호 · 김정훈 · 박민식 · 김태호 · 하태경 · 서용교 의원 발의)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부좌현 · 강창일 · 이개호 · 조정식 · 안규백 · 김성곤 · 박남춘 · 노영민 · 백군기 · 황주홍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김민기 · 이개호 · 부좌현 · 박홍근 · 이목희 · 김광진 · 노웅래 · 진선미 · 박남춘 · 황주홍 의원 발의)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황주홍 · 김광진 · 김춘진 · 박민수 · 송호창 · 강창일 · 조정식 · 이찬열 · 유성엽 · 김민기 의원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황주홍 · 김광진 · 김춘진 · 박민수 · 송호창 · 강창일 · 조정식 · 이찬열 · 유성엽 · 김민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5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회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 5. 8 정부 제출)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김용태 · 김성태 · 정두언 · 유의동 · 이진복 · 김종훈 · 이운룡 · 박대동 · 강석훈 · 신성범 · 이현재 · 경대수 의원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정성호 · 민홍철 · 김광진 · 최동익 · 신경민 · 조정식 · 강동원 · 김태원 · 이찬열 · 박기춘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최봉홍 · 박맹우 · 김태원 · 한선교 · 박창식 · 김성태 · 권성동 · 양창영 · 서용교 · 김태환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박광온 · 이개호 · 최재성 · 부좌현 · 이목희 · 황주홍 · 이춘석 · 박민수 · 김성곤 · 이찬열 · 박지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5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5. 5. 8 남인순 · 김광진 · 박홍근 · 심상정 · 유승희 · 이개호 · 이미경 · 조정식 · 진선미 · 황주홍 의원 발의)

5월 1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5. 5. 11 김기선 · 정용기 · 문정림 · 염동열 · 조원진 · 이우현 · 홍철호 · 김장실 · 김도읍 · 박덕흠 의원 발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5. 5. 11 정우택 · 강석훈 · 김용태 · 박대동 · 이강후 · 김종훈 · 신동우 · 이운룡 · 김상민 · 김현숙 · 문정림 · 김제식 · 박윤옥 · 김정록 · 정문헌 · 김한표 · 유의동 · 김을동 · 김정훈 · 김태환 · 이재영 · 이한성 · 조명철 의원 발의)

이상 2건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5. 5. 11 김학용 · 이노근 · 류지영 · 한선교 · 이한성 · 박민식 · 유의동 · 박맹우 · 이상일 · 조명철 의원 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5. 5. 11 이철우·유승민·박명재·정희수·홍지만·정두언·권성동·강기윤·조현룡·강석호·박수현·강은희·황주홍·박혜자·김윤덕·이윤석·권은희·김희국·이한성·김영록·이주영·정용기·박민수·이장우·김종태 의원 발의)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노후원전 고리1호기 폐쇄 촉구 결의안

(2015. 5. 11 조정태·조정식·배재정·박홍근·이인영·김정훈·서영교·유승희·민홍철·權垠希·김광진·이개호·이해찬·유성엽·문대성·김제남·하태경·홍영표·전순옥·전정희·추미애·박완주·백재현·부좌현·이원욱·노영민·오영식 의원 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음

障碍人·老人·妊産婦등의便宜増進保障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5. 5. 11 김기선·황주홍·박민수·이에리사·김진태·정용기·문정림·염동열·조원진·이우현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5. 5. 11 윤명희·정갑윤·이한성·박윤옥·김우남·조명철·이주영·정문헌·김춘진·이종배 의원 발의)

이상 2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

(2015. 5. 11 김현미·안규백·이인영·신경민·우원식·박광온·이목희·은수미·홍종학·최재성·장하나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5. 5. 11 이인영·이개호·조정식·정성호·한정애·최민희·김광진·장하나·유승희·김성태·홍영표·김기준·임수경·김승남·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2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2015. 5. 11 박수현·박홍근·김윤덕·장윤석·유기홍·박남춘·김광진·김상희·이완영·이미경 의원 발의)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5. 5. 12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제3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5. 5. 12 의장 제의)

5월 11일부터 5월 28일까지(18일간)

휴회의 건

(2015. 5. 12 의장 제의)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15일간)

○의안 심사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4. 1. 23 민병두·배기운·홍종학·박홍근·이낙연·이종걸·서영교·최원식·김경협·최재천·이언주·장하나·변재일·이상직·부좌현·박수현·우원식·김상희·정진후·인재근·유은혜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4. 3. 31 서기호·정진후·심상정·김제남·박원석·안규백·최원식·부좌현·장하나·박지원·강동원·배재정·윤관석·전순옥 의원 발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김진태·강석훈·권성동·한기호·이한성·김희선·조명철·이강후·강석호·이이재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2015. 4. 13 강석훈·나성린·박맹우·김광림·조명철·이만우·박명재·정문헌·박덕흠·류성걸·정희수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5. 4. 14 심재철·김태원·양창영·이강후·이노근·김용남·주호영·권성동·정미경·홍철호·김영우·이철우·황영철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5. 4. 16 심재철·김용남·이노근·김기선·이학재·정동기·이철우·김재원·이명수·최봉홍·양창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기획재정위원장 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2013. 8. 7 홍문종 · 이만우 · 윤진식 · 김세연 · 남경필 · 이재영 · 이한성 · 김태원 · 황진하 · 신동우 · 안효대 · 이진복 · 이채익 · 김을동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조해진 · 서상기 · 배덕광 · 민병주 · 심학봉 · 김재경 · 홍지만 · 류지영 · 김을동 · 이만우 · 강길부 의원 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김광진 · 노영민 · 박남춘 · 박민수 · 박홍근 · 변재일 · 부좌현 · 이개호 · 이해찬 · 정청래 의원 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2. 30 정부 제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4. 15 박남춘 · 안규백 · 박민수 · 배기운 · 추미애 · 진성준 · 황주홍 · 김태년 · 배재정 · 이원욱 의원 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2015. 1. 30 이재영 · 서상기 · 김을동 · 홍지만 · 서용교 · 김세연 · 유승민 · 민병주 · 이한성 · 김도읍 · 황인자 · 홍철호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최민희 · 문병호 · 임수경 · 정성호 · 이개호 · 김성곤 · 윤호중 · 박남춘 · 신경민 · 추미애 의원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2. 29 정부 제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1. 17 김태원 · 김세연 · 박성호 · 이명수 · 김성곤 · 이노근 · 김영우 · 박명재 · 정몽준 · 박인숙 의원 발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2014. 3. 4 황인자 · 이낙연 · 김태원 · 홍문표 · 김정록 · 염동열 · 손인춘 · 서용교 · 윤명희 · 노철래 의원 발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5. 1. 7 우상호 · 임수경 · 정청래 · 박민수 · 박남춘 · 이개호 · 김성곤 · 최원식 · 안규백 · 이인영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9 우상호 · 이인영 · 강동원 · 김승남 · 최민희 · 박홍근 · 윤관석 · 진성준 · 김광진 · 김현미 의원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9 장병완 · 이개호 · 백재현 · 김승남 · 김민기 · 김영록 · 윤관석 · 강창일 · 서기호 · 강기정 의원 발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5 정부 제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2. 31 강은희 · 이철우 · 서상기 · 전하진 · 강석호 · 김경협 · 박명재 · 이명수 · 김상훈 · 이만우 · 김희국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2014. 3. 14 김윤덕 · 강기정 · 이상직 · 박홍근 · 배기운 · 강동원 · 조정식 · 홍의락 · 최민희 · 박민수 · 김관영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2014. 9. 19 서상기 · 안민석 · 김태환 · 이학재 · 주호영 · 강석호 · 강은희 · 김장실 · 하태경 · 홍철호 · 이종배 · 류성걸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 의원 대표발의)

(2014. 10. 7 민병주 · 권은희 · 김상훈 · 김을동 · 김정록 · 김재경 · 배덕광 · 서상기 · 송영근 · 이근현 · 이우현 · 이채익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유승희 · 황주홍 · 이개호 · 박남춘 · 최원식 · 김성곤 · 임수경 · 은수미 · 우원식 · 송호창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9 장하나 · 김광진 · 김상희 · 남인순 · 박광온 · 박남춘 · 배재정 · 백재현 · 신경민 · 이개호 · 이미경 · 이학영 · 전해철 · 정성호 ·

한명숙 · 한정애 의원 발의)

(이상 2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20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5. 1. 2 이상일 · 유승민 · 이종훈 · 조명철 · 이한성 · 안홍준 · 김명연 · 김기선 · 원유철 · 이우현 · 신성범 · 신의진 · 이에리사 · 강은희 · 윤재옥 · 박대출 의원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015. 1. 16 김태년 · 박홍근 · 배재정 · 설훈 · 안민석 · 유기홍 · 유인태 · 이원욱 · 정세균 · 정진후 의원 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3. 31 정부 제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14. 9. 30 신성범 · 강기운 · 여상규 · 이에리사 · 유재중 · 김재경 · 김을동 · 박덕흠 · 유승우 · 강은희 의원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 박혜자 · 박주선 · 박홍근 · 정진후 · 김태년 · 도종환 · 설훈 · 유기홍 · 배재정 · 윤관석 · 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고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

(2015. 4. 9 이원욱 · 김경협 · 이개호 · 한정애 · 민홍철 · 홍익표 · 김기준 · 심재권 · 조정식 · 부좌현 · 노웅래 · 이재오 · 유성엽 · 도종환 · 최민희 · 강동원 · 안민석 · 임내현 · 이미경 · 배재정 · 김윤덕 · 김상희 · 강창일 · 한명숙 · 최규성 · 박광온 · 홍종학 · 이종걸 · 주승용 · 전정희 · 박홍근 · 오영식 · 박지원 · 노영민 · 정세균 · 박성호 · 백재현 · 최재성 · 이우현 · 정청래 · 신정훈 · 이해찬 · 서영교 · 김민기 · 강기정 · 박완주 · 진선미 · 이목희 · 정호준 · 설훈 · 이석현 · 박기춘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3. 11. 7 송영근 · 김한표 · 류지영 · 김종태 · 남경필 · 정문헌 · 이한성 · 정희수 · 조명철 · 현영희 · 서병수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20 김광진 · 배기운 · 진성준 · 이춘석 · 장하나 · 배재정 · 김재운 · 이미경 · 김우남 · 서영교 · 유승민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5. 4. 2 박광온 · 한명숙 · 황주홍 · 이춘석 · 신경민 · 인재근 · 박지원 · 최동익 · 김광진 · 변재일 · 조정식 · 이목희 · 주승용 · 김상희 · 민홍철 · 이상직 · 전해철 · 박남춘 · 정청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국방위원장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 백재현 · 배재정 · 김상희 · 김재운 · 정청래 · 유기홍 · 진선미 · 도종환 · 문희상 · 유대운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김장실 · 주호영 · 서상기 · 이상일 · 황인자 · 이완영 · 박인숙 · 이만우 · 안홍준 · 송영근 · 손인춘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박남춘 · 임수경 · 최민희 · 인재근 · 김성곤 · 주승용 · 김현 · 김제남 · 정청래 · 유대운 · 박민수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김민기 · 이개호 · 김기준 · 노웅래 · 홍의락 · 임수경 · 진선미 · 김승남 · 이인영 · 홍종학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5. 2. 24 이찬열 · 백재현 · 김윤덕 · 이개호 · 조정식 · 양승조 · 김경협 · 변재일 · 김광진 · 강동원 의원 발의)

(이상 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안전행정위원장 보고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2013. 12. 4 이낙연 · 김태원 · 배기운 · 박인숙 · 김용익 · 황주홍 · 최동익 · 김세연 · 홍종학 · 이재영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4. 4. 25 박인숙 · 김종대 · 이만우 · 조명철 · 윤영석 · 주호영 · 강은희 · 정우택 · 윤재옥 · 김한표 · 김세연 · 박윤옥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

(2014. 5. 2 심윤조 · 안덕수 · 김종대 · 윤재옥 · 정문헌 · 정성호 · 한선교 · 홍문종 · 이명수 · 김성찬 · 이만우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2014. 5. 12 백재현 · 배기운 · 박남춘 · 김재윤 · 윤후덕 · 부좌현 · 김기준 · 김경협 · 이찬열 · 이상직 · 유성엽 · 유대운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4. 5. 19 류지영 · 이한성 · 성완중 · 송영근 · 김재경 · 강석호 · 최봉홍 · 이만우 · 윤명희 · 심윤조 · 안덕수 · 박명재 · 손인춘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

(2014. 5. 27 이운룡 · 이재영 · 김선동 · 정희수 · 김태원 · 강석호 · 윤명희 · 홍문표 · 김태환 · 김종대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4. 5. 29 김승남 · 김관영 · 진선미 · 최민희 · 김광진 · 김상희 · 부좌현 · 전순옥 · 정성호 · 이상민 · 원혜영 · 황주홍 · 김성곤 · 김영록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4. 6. 3 이상직 · 윤호중 · 전순옥 · 박민수 · 김상희 · 최민희 · 정성호 · 김관영 · 진선미 · 이석현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4. 6. 9 최규성 · 황주홍 · 김윤덕 · 김승남 · 이상직 · 김춘진 · 김영록 · 배기운 · 노영민 · 박기춘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

(2014. 6. 10 유대운 · 전순옥 · 유기홍 · 김재윤 · 진선미 · 장하나 · 부좌현 · 김광진 · 이상직 · 정성호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대 의원 대표발의)

(2014. 6. 13 김종대 · 홍문표 · 김영록 · 황영철 · 송영근 · 이노근 · 정의화 · 윤영석 · 강은희 · 손인춘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2014. 6. 23 조명철 · 김성찬 · 송영근 · 이장우 · 강은희 · 박윤옥 · 류성걸 · 김광림 · 유일호 · 이한성 · 이에리사 · 문정림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7. 15 부좌현 · 황주홍 · 김현미 · 임수경 · 정진후 · 김광진 · 김경협 · 박남춘 · 강창일 · 정청래 · 김성곤 · 김민기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8. 12 박남춘 · 강창일 · 김성곤 · 김제남 · 정진후 · 장하나 · 유대운 · 김재윤 · 김광진 · 노응래 · 정청래 · 백재현 · 윤관석 · 임수경 · 최민희 · 원혜영 · 박민수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4. 8. 21 황주홍 · 백재현 · 문병호 · 오제세 · 김승남 · 임수경 · 이찬열 · 박민수 · 유성엽 · 이원욱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8. 29 최민희 · 김제남 · 정성호 · 임수경 · 김성곤 · 부좌현 · 유기홍 · 김현미 · 민홍철 · 김광진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최규성 · 박주선 · 주승용 · 김윤덕 · 이상직 · 김승남 · 노영민 · 김영록 · 김우남 · 김춘진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2. 3 윤명희 · 이완구 · 이한성 · 강은희 · 박윤옥 · 김한표 · 이만우 · 길정우 · 이명수 · 박덕흠 · 이에리사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부좌현 · 강창일 · 이개호 · 이원욱 · 노영민 · 김광진 · 정청래 · 김관영 · 최민희 · 김현 · 박홍근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7 이상규 · 박민수 · 서영교 · 백재현 · 강동원 · 이석기 · 오병윤 · 김재현 · 김미희 · 정진후 의원 발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0 안효대 · 박맹우 · 정갑윤 · 박대동 · 김우남 · 김현숙 · 윤명희 · 홍문표 · 박덕흠 · 이자스민 · 김종대 · 경대수 · 안덕수 · 강석호 의원 발의)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2015. 1. 28 경대수 · 이종배 · 이명수 · 김승남 ·

이인제 · 유승우 · 신성범 · 문정림 · 장윤석 · 안홍준 의원 발의)

농산물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2. 4 김춘진 · 최원식 · 윤관석 · 김우남 · 문정림 · 박민수 · 신계륜 · 남인순 · 김성곤 · 최규성 의원 발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4. 5. 20 박민수 · 김승남 · 김영록 · 김윤덕 · 김춘진 · 백재현 · 부좌현 · 이춘석 · 정성호 · 정청래 의원 발의)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이해찬 의원 대표발의)

(2014. 5. 23 이해찬 · 김현 · 유기홍 · 원혜영 · 배재정 · 김경협 · 김광진 · 김용익 · 유대운 · 김태년 · 황주홍 · 홍영표 · 이만우 · 박주선 · 심상정 · 홍종학 · 김재윤 · 윤후덕 · 윤호중 · 변재일 · 백재현 · 김성주 · 박홍근 · 이상직 · 추미애 · 부좌현 · 김상희 · 김영록 · 문재인 · 최동익 · 정성호 · 장하나 · 신성범 · 최민희 · 김춘진 · 이학영 · 이미경 · 유성엽 · 정청래 의원 발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

(2014. 10. 31 정부 제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7 김우남 · 주승용 · 김영록 · 최규성 · 부좌현 · 홍문표 · 강동원 · 김춘진 · 강기정 · 김종태 의원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 발의)

(2014. 12. 9 윤명희 · 박인숙 · 이노근 · 전순옥 · 김승남 · 서청원 · 박윤옥 · 김종태 · 송영근 · 김상훈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2014. 2. 18 김승남 · 이상민 · 진성준 · 김민기 · 서영교 · 배기운 · 이원욱 · 이인영 · 박남춘 · 박홍근 · 박민수 · 유대운 · 김광진 · 남인순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덕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1 안덕수 · 한기호 · 윤영석 · 이우현 · 박맹우 · 박명재 · 황인자 · 박덕흠 · 김명연 ·

김춘진 · 최봉홍 · 김동완 · 한선교 · 박인숙 · 정수성 · 정문헌 · 황진하 · 홍문표 의원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014. 12. 29 정부 제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5. 3. 16 황주홍 · 부좌현 · 김성곤 · 이개호 · 박영선 · 김광진 · 이찬열 · 김영록 · 최동익 · 민홍철 · 윤관석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4. 2 정부 제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5. 3. 11 민홍철 · 이개호 · 김영록 · 유성엽 · 김관영 · 김승남 · 정호준 · 주승용 · 장병완 · 변재일 · 박주선 · 임수경 · 신정훈 · 이찬열 의원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5. 3. 17 김우남 · 부좌현 · 서영교 · 강기정 · 신기남 · 최규성 · 조경태 · 유성엽 · 김춘진 · 홍문표 의원 발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5. 3. 30 이병석 · 양창영 · 정갑윤 · 윤재옥 · 박수현 · 김종태 · 이채익 · 홍일표 · 홍철호 · 김명연 · 이운룡 · 이우현 · 이강후 · 이만우 · 박명재 · 김도읍 · 강석호 · 권성동 · 김정록 · 심학봉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김우남 · 주승용 · 김영록 · 최규성 · 부좌현 · 홍문표 · 강동원 · 김춘진 · 강기정 · 김종태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4. 12. 5 신정훈 · 김영록 · 박광운 · 주승용 · 추미애 · 이종걸 · 김성곤 · 박지원 · 박홍근 · 노영민 · 박민수 의원 발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4. 12. 30 유성엽 · 김승남 · 최원식 · 김영록 · 김춘진 · 박민수 · 황주홍 · 도종환 · 이찬열 · 김우남 · 김성곤 · 이춘석 · 강동원 의원 발의)
(이상 3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장

보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 발의)

(2013. 10. 18 오제세 · 김춘진 · 박민수 · 배기운 · 김재윤 · 김성곤 · 윤관석 · 김용익 · 이목희 · 양승조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21 이채익 · 박대동 · 강길부 · 김태호 · 윤영석 · 이노근 · 이진복 · 현영희 · 이재영 · 이현재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 발의)

(2013. 11. 28 김정록 · 이한성 · 이만우 · 이주영 · 김명연 · 주영순 · 김태원 · 박인숙 · 김상훈 · 문대성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 발의)

(2014. 2. 10 김용익 · 최동익 · 이미경 · 변재일 · 양승조 · 이학영 · 이춘석 · 안민석 · 유은혜 · 전순옥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 의원 대표발의)

(2014. 8. 21 신경림 · 전순옥 · 오제세 · 유승민 · 강기윤 · 김광진 · 이에리사 · 김정록 · 윤명희 · 이한성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2013. 5. 21 김정록 · 주영순 · 이진복 · 이한성 · 김현숙 · 이만우 · 손인춘 · 김을동 · 송영근 · 윤명희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 발의)

(2014. 1. 14 김용익 · 원혜영 · 도종환 · 이춘석 · 오제세 · 이학영 · 이언주 · 김기준 · 인재근 · 양승조 · 남인순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2014. 7. 16 최동익 · 안홍준 · 오제세 · 부좌현 · 김경협 · 김기준 · 전순옥 · 이상직 · 이목희 · 안규백 · 전정희 · 김상희 · 김기식 · 김성곤 · 김태년 · 김승남 · 이해찬 · 김광진 · 김재윤 · 박남춘 · 황주홍 · 인재근 · 남인순 의원 발의)
(이상 8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8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주거복지기본법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 이미경 · 이윤석 · 김성곤 · 김용익 ·

김태년 · 주승용 · 최원식 · 박수현 · 남인순 · 이상직 · 전정희 · 배재정 · 변재일 · 은수미 · 신장용 · 김영주 · 문병호 · 홍중학 · 서영교 · 유승희 · 장하나 · 배기운 · 문희상 · 김기준 · 윤호중 · 최민희 · 우원식 · 홍영표 · 김상희 · 유성엽 · 임내현 · 신기남 · 임수경 · 김현미 · 신경민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1. 13 김태원 · 이낙연 · 윤후덕 · 박명재 · 이만우 · 김동완 · 이노근 · 박인숙 · 문대성 · 강기윤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8 김성태 · 유승우 · 이노근 · 이완영 · 나성린 · 최봉홍 · 황영철 · 박성호 · 함진규 · 김태원 의원 발의)

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5. 1. 29 김성태 · 강석호 · 권성동 · 김도읍 · 김태원 · 김희국 · 박민식 · 유승우 · 이노근 · 이완영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4. 9. 4 이노근 · 정희수 · 이우현 · 김태원 · 손인춘 · 김종태 · 함진규 · 김희국 · 김영우 · 이에리사 · 김태흠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4. 9. 30 김성태 · 박성호 · 유승우 · 이노근 · 강석호 · 이완영 · 주영순 · 나성린 · 최봉홍 · 박민식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 김성태 · 박성호 · 유승우 · 이노근 · 강석호 · 이완영 · 주영순 · 나성린 · 최봉홍 · 이학재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4. 6. 9 김태원 · 손인춘 · 이만우 · 민현주 · 이명수 · 박인숙 · 정성호 · 이에리사 · 강기윤 · 박성호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 발의)

(2014. 9. 2 심재철 · 유기준 · 김명연 · 이에리사 · 이한성 · 조해진 · 한선교 · 이만우 · 김종태 · 박윤옥 의원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25 김성태 · 강석호 · 김희국 · 함진규 · 이노근 · 황영철 · 이윤석 · 이상직 · 조현룡 ·

김태원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4. 5. 8 강석호 · 이노근 · 박명재 · 문대성 · 나성린 · 안효대 · 황주홍 · 김태환 · 김진태 · 박민식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4. 8. 7 김성태 · 최봉홍 · 정문현 · 이완영 · 김용태 · 김기선 · 박명재 · 박민식 · 황영철 · 김학용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

(2014. 8. 8 김재운 · 최민희 · 윤관석 · 유승민 · 박남춘 · 서영교 · 최재성 · 정성호 · 임수경 · 김승남 · 강기정 · 김광진 · 김우남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4. 8. 13 원혜영 · 신기남 · 김경협 · 정우택 · 오영식 · 이원욱 · 김성곤 · 유대운 · 유인태 · 김상희 · 이찬열 · 진영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진 의원 대표발의)

(2014. 9. 1 이종진 · 신기남 · 김을동 · 노철래 · 경대수 · 김희국 · 이채익 · 이노근 · 김상훈 · 양창영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4. 9. 2 심재철 · 유기준 · 김명연 · 이에리사 · 이한성 · 조해진 · 한선교 · 이만우 · 김종태 · 박윤옥 의원 발의)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 김태원 · 김성곤 · 강기윤 · 박윤옥 · 이에리사 · 이명수 · 김종태 · 이만우 · 이한성 · 김한표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4. 3. 3 최원식 · 이춘석 · 전순옥 · 이찬열 · 김경협 · 이학영 · 서영교 · 변재일 · 김제남 · 이언주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

(2014. 4. 7 이현승 · 문정림 · 이노근 · 김태원 · 김한표 · 이우현 · 이채익 · 나성린 · 서용교 · 홍지만 · 윤상현 · 박대출 · 유기준 · 박창식 · 김세연 · 김도읍 의원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2014. 5. 1 박수현 · 윤후덕 · 부좌현 · 강창일 · 김성곤 · 정성호 · 이미경 · 김광진 · 황주홍 · 김상희 · 임내현 · 이석현 · 양승조 의원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정청래 · 부좌현 · 주승용 · 박남춘 · 강기정 · 김광진 · 이원욱 · 박주선 · 박민수 · 배재정 의원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박성호 · 김태원 · 강기윤 · 이종배 · 박맹우 · 홍지만 · 박창식 · 이완영 · 이학재 · 박명재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0. 8 이완영 · 김성태 · 권성동 · 이학재 · 김상훈 · 이노근 · 강길부 · 홍지만 · 김명연 · 정수성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이장우 · 이노근 · 이우현 · 함진규 · 김성태 · 이완영 · 김희국 · 이상직 · 조현룡 · 이윤석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2014. 2. 7 이미경 · 윤후덕 · 민홍철 · 이학영 · 유승희 · 이상직 · 최민희 · 우원식 · 은수미 · 배재정 · 홍종학 · 윤관석 · 장하나 · 유은혜 · 윤호중 · 한명숙 · 설훈 · 변재일 · 진정희 · 박홍근 · 전순옥 · 진선미 · 김관영 · 진성준 · 박수현 · 서영교 · 이언주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4. 9. 2 심재철 · 유기준 · 김명연 · 이에리사 · 이한성 · 조해진 · 한선교 · 이만우 · 김종태 · 박윤옥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4. 9. 26 이완영 · 이상직 · 김성곤 · 강길부 · 김성태 · 김현숙 · 홍지만 · 김상훈 · 이우현 · 김상민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0. 8 이완영 · 김성태 · 권성동 · 이학재 · 김상훈 · 이노근 · 강길부 · 홍지만 · 김명연 · 정수성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변재일·오제세·주승용·박남춘·이찬열·강동원·이윤석·장병완·양승조·박수현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3. 2. 13 함진규·홍문표·김태호·조정식·황진하·이재영·이장우·박수현·문병호·민홍철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3. 5. 3 이장우·이명수·이종진·이노근·안효대·박상은·이현승·김을동·신의진·손인춘·박대출·김도읍·이철우·이한성·이만우·정우택·이에리사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3. 6. 24 박완주·전순옥·박수현·이목희·인재근·강기정·남인순·이인영·김성주·양승조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6. 30 이찬열·이종걸·박남춘·전병헌·변재일·안민석·김현미·안규백·신학용·배재정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2014. 8. 21 박수현·신경민·배재정·한명숙·홍의락·임수경·도종환·정성호·박남춘·김성곤·남인순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4. 10. 13 이노근·강석호·정희수·송광호·박성호·이장우·김태원·김희국·이우현·함진규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7 한정애·이윤석·김경협·박광운·장하나·이인영·박범계·이석현·배재정·도종환·박지원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8 김성태·황영철·이노근·박성호·함진규·김태원·강석호·권성동·이완영·최봉홍·홍지만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0. 29 민홍철·최민희·노영민·임수경·변재일·주승용·이윤석·정청래·조정식·장병완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4. 12. 30 황주홍·유성엽·박민수·김춘진·이상직·최규성·이개호·김성곤·장병완·정세균 의원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5. 2. 27 박성호·강기운·이종배·박맹우·김태원·정미경·김제식·홍지만·박창식·이강후 의원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3. 8. 19 주승용·배기운·박수현·이윤석·강창일·이춘석·강석호·김관영·김성곤·최규성 의원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4. 5. 29 김관영·정우택·윤후덕·이윤석·변재일·전정희·조현룡·김승남·최봉홍·김희국 의원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4. 6. 30 이노근·강석호·김태원·이명수·조현룡·안효대·함진규·최봉홍·이종진·박윤옥·이현재·이장우 의원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9. 29 정부 제출)

(이상 44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44건 국토교통위원장 보고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2014. 4. 24 윤명희·황주홍·황인자·이만우·김종태·김정록·강은희·류지영·이에리사·이자스민 의원 발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4. 2. 28 이자스민·이한성·손인춘·정몽준·이노근·이만우·이명수·조명철·박인숙·이에리사·김태원·유성엽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0. 6 윤관석·전정희·오영식·안규백·이상직·노영민·진성준·임수경·박수현·안민석·이목희·우원식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5. 2. 4 남인순·이미경·이학영·정성호·전정희·임수경·진선미·박남춘·김현미·김광진 의원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31 박민수·양승조·이개호·김우남·정청래·백재현·김광진·김동철·김춘진·유성엽 의원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2015. 2. 24 김장실·박민수·이종훈·서상기·김성곤·유승우·강은희·민홍철·이한성·황주홍·이상일·민현주·김세연 의원 발의)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5. 3. 24 임수경·박홍근·최규성·배재정·윤관석·정성호·김영록·최민희·추미애·조정식·심재권·신정훈·이원욱 의원 발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

(2014. 12. 29 박혜자·강기정·장병완·박주선·임내현·배재정·유기홍·박홍근·김동철·윤관석 의원 발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5. 4. 6 유승희·유기홍·이개호·김광진·민홍철·김상희·정청래·박완주·은수미·장하나 의원 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2. 3 류지영·강석훈·안홍준·송영근·김명연·홍지만·유의동·김한표·이재영·김광립 의원 발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5 정희수·송영근·홍철호·김태환·김종태·이노근·이명수·최봉홍·나경원·이자스민 의원 발의)

(이상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1건 여성가족위원장 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2. 5. 30 박기춘·박완주·최규성·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이찬열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

(2014. 1. 2 이상규·장하나·김선동·김미희·김재연·이석현·이석기·오병윤·박주선·이만우·서영교·김재윤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2. 9 원혜영·홍종학·진선미·신정훈·전정희·민병두·김승남·김기식·김윤덕·유은혜·남인순·이학영·우상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1 하태경·김정록·박윤옥·강석호·민현주·정희수·민병주·김상훈·손인춘·전하진·이종훈·김명연·나성린·정용기·박인숙·권은희·이강후·김동완·이종진·황영철·송영근·경대수·이한구·박맹우·김학용·최봉홍·이에리사·김을동·김종훈·이병석·김기선·서상기·서용교·이채익·이학재·이인제·신동우·윤상현·강창희·조원진·이정현·박명재·박덕흠·김세연·김영우·이상일·홍지만·김현숙·문대성·강은희·이운룡·정병국·심윤조·김희선·류성걸·조현룡·여상규·김정훈·이우현·정미경·유의동·김태환·안홍준·김한표·강길부·이균현·원유철·김광립·이현승·유일호·이만우·김용태·심재철·이이재·강석훈·유승민·정수성·권성동·박대출·김성태·이노근·길정우·김성찬·장윤석·류지영·박성호·주호영·홍철호·김태호·박민식·문정립·윤명희·주영순·함진규·김종태·유재중·이현재·이재영·김태원·홍일표·정두언·홍문중·이한성·황진하·조해진·박창식·서청원·이종배·박대동·신경립·이주영·김제식·노철래·황인자·조명철·나경원·심학봉·이진복·안덕수·김재원·김태흠·안효대·이완구·김무성·이자스민·이완영·김재경·김희정·홍문표·이철우·송광호·정우택·최경환·이장우·김상민·김장실·염동열·신의진·김용남·강기윤·윤재옥·정문현·김희국·정갑윤·이명수·김도읍·양창영·한선교·배덕광·진영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5. 4. 17 김상희·임수경·인재근·전정희·김현·윤호중·은수미·이인영·김현미·설훈·이미경·한명숙·서영교·이학영·진선미·양승조 의원 발의)

(이상 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5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보고

○의안 철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윤상현·염동열·문대성·조원진·정용기·노철래·원유철·안홍준·안덕수·김종태·홍문표·박덕흠·이우현·민병주 의원 발의)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3. 5. 6 심재철·이만우·조명철·유기준·박상은·김태흠·안효대·정우택·박창식·김장실·김명연·고희선·김학용·길정우·윤재옥·정문헌·송광호 의원 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3. 3. 25 진선미·유은혜·남인순·최민희·배재정·윤관석·이명수·백재현·김광진·정진후 의원 발의)

이상 3건 2015년 5월 6일 발의자 철회 요구

국회의원(배재정) 징계안

(2012. 10. 22 김태흠·손인춘·신의진·정문헌·권성동·나성린·여상규·김희정·김진태·김학용·김희선·노철래·이주영·정갑윤·경대수·김세연·남경필·박인숙·김을동·이철우·이현재·김기선·박대출·김명연·홍지만·심재철 의원 요구)

국회의원(김현) 징계안

(2013. 9. 12 심재철 의원 요구)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

(2013. 9. 5 김현 의원 외 19인 요구)

국회의원(김태흠) 징계안

(2013. 3. 5 배재정 의원 요구)

이상 4건 2015년 5월 6일 요구자 철회 요구

○서면답변서 제출

제주도 강정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관련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5. 5. 6 정부 제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5. 5. 8 법원행정처 제출)

농업진흥구역내에 위치한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5. 5. 8 정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제333회국회(임시회) 집회 요구

일 시	2015년 5월 11일 오후 2시
집회근거	헌법 제47조제1항
이 유	안전처리 등
요 구 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 외 129인

(2015. 5. 6)